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828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2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08. 27.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9. 1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가. 제안이유

-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 제23조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다. 주요내용

1) 위탁시설명: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2)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운영인력	운영비	비고
고성시니어클럽	고성읍 송학로 47-3, 2층	6명	330,000천 원	

3)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노인일자리지원기관(고성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부대시설 및 작업장 포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승계 운영
- 기타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위탁기간: 2025. 1. 1. ~ 2029. 12. 31.(5년간)

5) 선정방식: 공개모집 공고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6) 신청자격: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 원)

시설명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고성시니어 클럽	330,000	292,135	12,450	25,415	
	산출내역	· 인건비: 6명×12월(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 · 공공운영비: 공과금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 등 ·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회의, 교육비 등			

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적정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인일자리 지원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 하였을 때 수탁자 명의 및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사무 자체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 관계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 노인의 복지 욕구를 전문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3)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민간자원(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재원 조달 방법이 다양하여 직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분야 관련하여 경험이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효율성 도모 가능
 - 민간의 복지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성과평가)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성과평가 가능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및 관련 법령·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 수행
 - 자체평가, 성과평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관의 회계의 투명성 확보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공정한 경쟁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법인 및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 및 취소 등의 조치 가능
- 8) 그 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 고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위탁운영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이 크므로 위탁 운영이 필요

마. 기대효과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 향상 도모

바. 향후 추진계획

- 1)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2024. 9.
- 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4. 10.
- 3) 수탁기관 선정: 2024. 10
- 4) 위탁 계약 체결 및 제반 준비: 2024. 11.
- 5) 위탁운영: 2025. 1. 1.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고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노인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9. 1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